

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[]지정 []지정사항변경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25일
신청인	기관 또는 단체명	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신청내역	검정기관의 명칭			
	검정기관의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	검정수수료 승인신청액			
	변경사항 (※변경신청 시에만 기재)		변경 전 변경 후	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([]지정, []지정사항변경)을 신청합니다.

이
한
도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1.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 2. 검정기관 재정부영계획서 1부 3.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4.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1부 ※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